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99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상훈
박준태 · 유용원 · 이종배
구자근 · 김기웅 · 김선교
김기현 · 강대식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에”를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제8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